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공을 위한 국민 참여 캠페인 경제혁신 모든 힘을 싣고 힘차게 달립니다.
대한민국 재도약의 힘, 창조경제
경제혁신
희망의 새시대
산업통상자원부 **보 도 자 료**
http://www.motie.go.kr

2016년 12월 22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(인터넷.방송.통신 배포즉시)

배포일시	2016. 12. 21.(수)	담당부서	지역경제총괄과 지역위협력팀
담당팀장	백경동 팀장 (044-203-4418)	담 당 자	윤태선 사무관(044-203-4452)

지방투자촉진보조금, 1조 3,351억원 지방투자 이끌다 !

- 267개사에 국비 1,250억원 지원하여 신규고용 2,990 여명 창출 -

□ 전통주력산업 구조개혁의 압력이 가중되고,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취약한 혁신역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**지방투자촉진보조금** 사업은 미약하지만 **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경제 불균형 완화에 기여**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

○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주형환)는 제5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(12.21) 결과,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5개사 등 총 12개사에 국비 156억원 지원을 결정하였다고 밝힘

○ 전체적으로는 올해 지원된 **보조금 총 1,250억원**을 통해 **1조 3,288억원 지방투자** 유도와 **2,990여개 일자리**를 창출함

□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자체가 유치한 지방투자 기업에게 지원하는 자금이며, '04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음

○ '16년 한 해 동안 지원한 기업별 유형을 살펴보면 ▲**지방이전 11개사,** 국비 166억원 ▲**신·증설투자 53개사**, 국비 853억원 ▲**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6개사**, 국비 40억원 ▲**스마트공장 186개사**, 국비 60억원 ▲**개성공단기업 10개사**, 국비 117억원 ▲**국내복귀 1개사**, 국비 16억원으로 각각 구분

○ **(지방이전, 신·증설)** '04년부터 시작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*은 '10년까지 증가하다가 최근 수요가 주춤하는 추세이나, 지방기업의 신·증설투자**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보조금사업 주력으로 자리매김함

- 광주·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**한전 협력사인 S社 등 3개사의 지방이전 지원은 혁신도시의 조기정착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발**하는 토대가 된 계기

* (지방이전) '10년(907억원) → '12년(563억원) → '14년(206억원) → '16년(166억원)
** (신·증설) '11년(244억원) → '12년(593억원) → '14년(612억원) → '16년(853억원)

○ **(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)** 조선업 경기 어려움으로 조선기자재업체의 대규모 매출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업다각화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로 설비투자액의 일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

- 올해 10월부터 제도를 마련하여 4/4분기 중에 6개사에 국비 40억원을 지원하고, 371억원의 지방투자와 126명의 고용을 창출, 내년에는 예산 134.8억원을 확보해서 상반기에 집중지원할 계획

- **울산소재 E社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활용**하여 각종 발전설비, 3D 프린터용 메탈파우더 등으로 **사업을 다각화하여 전체 매출의 40%로 신장할 전망**

- 지난 12.20(화) 울산시와 투자계획 의향서(MOU)를 체결하면서, 본 보조금이 본사의 사업다각화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

○ **(개성공단 기업)** 개성공단에서 영위하던 사업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장을 국내에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

- 금번(12.21) 개성공단기업 1개사에 국비 62.8억원을 포함, 그간 10개사에 국비 117억원을 지원하여 국내지역에 596억원의 대체투자 유도로 신규고용 263명을 창출하였고, 지난 6월 개성공단기업 지원을 시작으로 국내지역에서의 대체투자가 본궤도에 올라온 것으로 평가

○ **(스마트공장)** 제조업 도약을 위한 '제조업 혁신 3.0 전략'에 따라, **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한 공정의 효율화** 등 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

위해 수도권기업 지방이전, 신·증설 등 공장의 양적 증가 외에 질적 향상을 위한 **기존 공장 스마트화에 보조금을 지원**

- '15년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해 왔고, 총 186개사에 국비 60억원을 지원하였으며, 올해로 사업을 종료

○ **(국내복귀)** 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고,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중 일정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며, '16년에는 1개사에 국비 16억원 지원

□ **산업부 박기영 지역경제정책관은** "'17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예산은 1,326억원에 달하는 만큼 보조금 지원사업의 본래 취지를 최대한 살려 **지방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극대화에 최선**을 다하겠다"고 말하면서

○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의 모태인 **「수도권 기업 지방이전」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지역현장 의견수렴 등 지방투자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**해 나아갈 것임을 밝힘

□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전에 반드시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거쳐 투자계획 의향서 체결해야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

○ 투자계획 의향서를 체결하지 않고 먼저 투자를 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등 **동 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기업도 존재**

○ 동 보조금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해 숙지할 필요

※ 붙임: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요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위협력팀 윤태선 사무관(044-203-445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|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요

□ **(제도개요) 지방투자촉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**를 위해 지자체가 유치한 **지방투자기업*에 보조금 지원**

*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('04), 지방 신·증설투자('11), 국내 복귀기업('12),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백업라인 구축('1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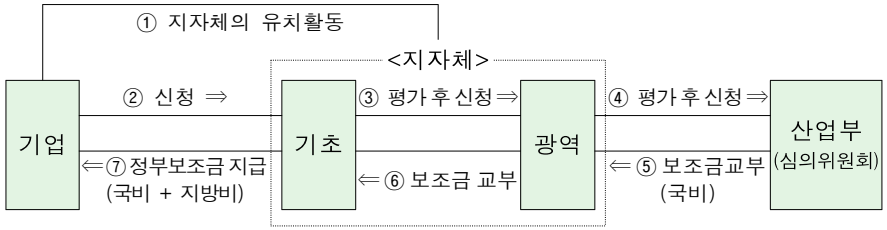
○ **(지원내용) 입지·설비투자**에 대해 **지역별·기업규모별**로 지원비율 및 국비·지방비 매칭비율을 차등 지원

* 일반지역·중소기업 기준으로 기업의 투자액의 일부(입지 30%, 설비 14%)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비·지방비 65:35 비율로 지원

○ **(지원절차)** 지자체가 유치하여 신청한 기업에 대해 산업부가 **지원타당성을 평가**하고, **심의위원회 의결**을 거쳐 지원 결정

* (위원장)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, (위원) 지역위협력팀장 및 변호사·회계사 등

< 보조금 지원 절차 흐름도 >



< 보조금 지원 비율 >

구 분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매칭비율 (국비:지방비)
수도권 인접지역	- (설비) 6%	- (설비) 8%	(입지) 9% (설비) 11%	45 : 55
일반지역	- (설비) 8%	(입지) 10% (설비) 11%	(입지) 30% (설비) 14%	65 : 35
지원우대 지역	- (설비) 11%	(입지) 20% (설비) 19%	(입지) 40% (설비) 24%	75 : 25

○ 산업부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지원이 결정되면 국비 전액을 해당 광역시도에 교부

참고 2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제도 개요

□ **(지원근거)** '16.2.10일, 개성공단 중단조치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체투자 지원 필요성 발생에 따라 「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」(산업부 고시 제2016-53호, '16.3.21)을 제정

○ **(지원대상)** 개성공단 중단조치 당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개로 한정, 이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수도권에 투자하는 경우도 지원

- 단,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이므로 지자체에 지원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, 대기업의 경우는 수도권 투자 지원대상 제외

○ **(지원업종)**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(제조업, 지식서비스산업, 정보통신산업에 한함)

○ **(신청기한)** 중단조치('16.2.10) 이후, 2년 이내('18.2.9)에 신청

○ **(지원내용)** 입지 및 설비보조 비율을 10%p 상향

구 분	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매칭비율 (국비:지방비)
수도권 & 인접지역	입지	-	10%	19%	45:55
	설비	6%	18%	21%	
일반지역	입지	-	20%	30%	65:35
	설비	8%	21%	24%	
우대지역	입지	-	30%	40%	75:25
	설비	11%	29%	34%	

□ **(특례조항)** 원칙적으로 현행고시를 준용하되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특수상황을 감안하여 몇가지 요건 완화

- 자격요건 및 지자체 사전유치 불요, 신청기간 제한 및 담보제공의 유연성 등

○ **(기타사항)**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특례조항을 제외하고는 「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」(산업부 고시 제2016-19호, '16.2.4)을 준용 (투자수행, 보조금 정산, 사후관리 등)

참고 3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제도 개요

□ **(추진배경)** 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다각화 투자에 대한 설비보조금 지원으로 **고용안정**과 **지역경제 침체완화** 도모*

* 근거 :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,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

□ **(지원대상) 지방**에서 **사업다각화** 투자를 하는 **조선기자재업체**

○ 사업다각화는 조선기자재업을 관두고 새로운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, 조선기자재업 外 업종의 비중을 **30%p** 이상 늘리는 경우 의미

○ 국내에서 **3년 이상 사업**을 **영위**하고, 최근 2년의 **조선기자재업 관련 매출비중**이 **30% 이상**인 **중소기업** 및 **중견기업**

○ 지원기준 제정('16.9.30) 후 **2년 이내** 신청분에 대해서만 한시지원

□ **(지원내용)** 중소기업이 일반지역에서 사업다각화 투자를 수행하는 경우 **설비투자금액***의 **14%**까지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

* 설비투자금액은 사업다각화 투자를 위해 필요한 건설투자비용과 기계장비구입비용을 의미하며 건물매입비용, 매입건물에 속해 있던 장비매입비용은 제외

지역 구분	지원비율		국비 비율
	중견기업	중소기업	
일반지역	11%이내	14%이내	65%
수도권 인접지역	8%이내	11%이내	45%
지원우대지역	19%이내	24%이내	75%

□ **(사후관리)** 사후관리 기간 동안 **사업다각화 목표 달성***, **고용 유지****, **설비 반출 제한** 등의 의무를 부담

*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환하려던 업종이 사업다각화 매출액 기준(30%p)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목표 미달성분에 비례하여 보조금 환수

** 투자완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조금 신청 당시 고용인원을 유지해야 함